초음파 검사 질의응답

2024. 2.

			관련 근기	н
				1
개정	'16.11.7.	고시 제2016-149호	(2016.10.01.시행)	<1차 Q&A> 연번 1~70번('16.9.8.), <2차 Q&A>
개정	'18.3.29.	고시 제2018-66호	(2018.04.01.시행)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개정	'19.1.17.	고시 제2019-10호	(2019.02.01.시행)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개정	'19.2.22.	고시 제2019-33호	(2019.03.01.시행)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개정	'19.6.21.	고시 제2019-114호	(2019.07.01.시행)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개정	'19.8.23.	고시 제2019-185호	(2019.09.01.시행)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개정	'20.1.22.	고시 제2020-15호	(2020.02.01.시행)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개정	'20.8.28.	고시 제2020-192호	(2020.09.01.시행)	<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개정	'21.4.1.	고시 제2021-104호	(2021.04.01.시행)	<흉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개정	'21.9.1.	고시 제2021-231호	(2021.09.01.시행)	<심장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개정	'22.2.3.	고시 제2022-32호	(2022.02.15.시행)	<경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개정	'23.6.7.	고시 제2023-105호	(2023.07.01.시행)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 관련 Q&A>
개정	'23.8.11.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 관련 Q&A>(추가)
개정	'24.2.7.	고시 제2024-22호	(2024.03.01.시행)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 관련 Q&A>

- ※ 이 자료는 2016년부터 현재('24.2월)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Q&A를 합본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및「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난임치료 시술 관련 초음파 검사는「난임치료 시술 등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별도 참고
 - * 행위정의: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행위 → 행위정의 → 수가 조회





목 차

연번	제목	페이지
1	일반사항	1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관련 Q&A	5
3	- 임산부 초음파	10
4	- 유도·특수 초음파	13
5	급여 확대 초음파 관련 공통 Q&A	15
6	상복부 초음파 관련 Q&A	19
7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관련 Q&A	22
8	소아 복부 초음파 관련 Q&A	24
9	응급·중환자 초음파 관련 Q&A	26
10	남성생식기 초음파 관련 Q&A	30
11	여성생식기 초음파 관련 Q&A	31
12	안구·안와 초음파 관련 Q&A	33
13	흥부 초음파 관련 Q&A	35
14	심장 초음파 관련 Q&A	37
15	경부 초음파 관련 Q&A	39

일반사항

다음의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급여대상에게 급여 가능한 초음파 검사를 산정할 경우의 세부 내용임.

□ 수가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1 기존 2번	분류체계 개편 시 주요 변경사항 ('16.10.1.~)	(level 수가 도입) 초음파 검사는 CT, MRI와 달리 탐촉자를 이용하여 의사가 실시하므로 이상여부 판단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검사과정 중 난이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도플러 혹은 이상부위 계측, 기능검사등) level 수가를 도입함. <예시> 경흥부 심장 초음파, 간·담도·담당·비장·췌장 초음파, 연부조직 초음파, 임산부 초음파의기형아계측 등
		(편축→양축수가 변경) 안 초음파, 사지혈관 초음파는 양측수가로 재산출되어 양측을 검사한 경우 해당수가 소정점수로 산정함. <참고>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에 의거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검사를 하였을때에도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소정점수만 산정
2 기존 3번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주3'에 해당하는 항목은?	조영증강 초음파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며,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주3'에 의거해당 장기검사 소정점수의 30% 가산함. 조영제 주입료 등은 해당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다 음 초음파 검사 소견상 유방종양, 간종양, 전립샘종양, 신장종양, 췌장종양의 악성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대동맥, 신동맥, 간동맥의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가불분명한 경우 - 심장내막경계 윤곽과 심근 혈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 초음파 유도하 생검 또는 시술이 필요한 간종양, 전립샘종양, 췌장종양환자 상기 이외에는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10조, 제11조 및「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3조, 제5조의 절차를 따라야 함.
3 기존 4번	제한적 초음파는 어떠한 경우 산정하는가?	치료 전·후와 같이 환자 상태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초음파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실시할 경우 제한적 초음파(해당 검사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연번	질의	답변
4	나941~나951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기존	인접부위 적용기준	에서 정하는 2. 산정방법에 따라 적용하며 인접 부위는 다음과 같음.
86번		- 다 음 -
		(1) 나941가(1) 안구 / 나941가(2) 안와 (2) 나941나(1)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 나941나(2)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3) 나942가 유방·액와부 초음파 / 나942나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4) 나944가(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 나944가(2) 충수 초음파 /
		나944가(3) 소장·대장 초음파 / 나944가(4) 서혜부 초음파 / 나944나(1) 신장·부신·방광 초음파(or 나944나(2) 신장·부신 초음파 or 나944나(3) 방광 초음파)/나944다(1)'주'전립선·정낭 초음파(경복부) /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조금파 (5) 나946가(1) 손가락·발가락(편측) 초음파 / 나946가(3) 손목관절·발목관절 초음파
		(6) 나948나(1) 경동맥 초음파 / 나948나(2) 기타 동맥 초음파
		(7) 나948다(1) 상지-동맥 초음파 / 상지-정맥초음파 (8-1) 나948다(2) 하지-동맥 초음파 / 하지-정맥 초음파
		(8-2) 나948다(2) 하지-동맥 초음파 / 나948다(2)'주'하지 정맥류 검사
		(9)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 나951 임산부 초음파
5	나944가 복부 초음파	나944가 복부 초음파는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장기를 포함한 수가임.
기존 12번	에서 여러 부위 동시 실시 시 수가산정	따라서 복부 초음파 수가의 소분류(예: EB441, EB442 등) 항목에 포함되는 여러부위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 해당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6	나940 단순초음파	(단순초음파(I))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기존	산정방법	①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99번		②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③ 수술 부위 피부 위치 표시
		④ 단순 잔뇨량 측정
		(5) 장기크기 측정(ex 고환, 부고환, 비장, 난소, 자궁, 눈물샘, 눈물주머니 크기 측정, 방광 용적 등) (6) 말초정맥, IMT(Intima-media thickness, 경동맥 내중막 혈관두께), IVC(Inferior Vena Cava, 하대정맥) size 확인
		(단순초음파(II))
		①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
		- 경두개골결손 뇌실질 초음파
		- 보조생식술 약물 투여 후 난포의 크기, 수, 자궁내막두께 측정
		②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 역할로 실시하는 초음파
		- 천자부위 위치확인(방광천자, 관절천자, 복수천자, 음당천자 등) - 카테터 삽입부위 위치확인(경경정맥 간내문맥 정맥단락술 등)
		- 신장 주위 농양 배액술 시 위치 확인 및 평가

연번	질의	답변							
7	나940 단순초음파	단순초	단순초음파 또는 유도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세부내역을 "JS013"에 기재함						
	·나956 유도초음파	▶ (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기존 37번	산정 시 특정내역	코드	부위	코드	부위				
0, 5	기재방법	А	뇌	Н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В	안	I	여성생식기				
		С	비·부비동	J	근골격				
		D	경부	K	연부				
		E	흉부·유방	L	혈관				
		F	복부(간·담낭·췌장·대장 등)	М	신경(말초신경 등)				
		G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N	기타				
		(예시2) (예시3) (예시4) (예시5) (예시6) (예시7)	⇒ "E//수술 전 tattooing"비장 크기 측정만을 하는⇒ "F//비장 크기 측정"복수양 확인: 단순초음파(점: 유도 전 tatl 경우: I) 청- I 위하(인: 단 경우: 화 확인	E초음파(II) 청구 ooing: 유도초음파(I) 청구 단순초음파(I) 청구 겨 검사하였으나 양 많지 않아 순초음파(II) 청구 · 청구 단순초음파(I) 청구 : 단순초음파(I) 청구	· 검사만 실시"			

□ 청구방법

연번	질의	답변											
8 기존 40번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에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초음파 검사에 대하여 모두 기재함.											
9 기존 41번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 기재 방법	따라 - E	해당 입원명서 눈서대로	초음 서의] "결	파 경 : : 음	방법, 심사충 검사를 실시 우 초음파 7 파 검사 시형 음파를 실시	한 의사 검사가 2: 뱅일자"를	의 E 회 이	변허종 상 팀	동류와 단	변허번호	를 기재함	
						I	진료	내역					
			줄번호	항	목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 번호	
			0001	09	01	EB443 (복부 초음파- 충수 초음파)	69,840	1	1	69,840	1 (의사)	12345	
			0002	09	01	EB443001 (복부 초음파- 충수-제한적 초음파)		1	1	34,920	1 (의사)	12345	
							특정내역	기재	란				
			발생단	위구	분	줄번호	특정내역	역구분	<u>.</u>		특정내역		
				2		0001	JT02				2019020		
				2		0002	JT02				201902		
10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초음파 검사에					∥ 실시한 으 성사 시행일기							정내역
42번	기재하는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는?		내과에/ 의사 면			파 검사를 첫 기재	방하고,	영상	·의학	과에서 :	실시한 :	경우, 영상	의학과
11	A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 중에 B의사가	초음:	파 검시	l OII	영힝	·력이 가장	컸던 의사	나 19	민의	면허종류	류와 면허	번호를 기	Ⅰ재함.
43번	초음파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개 초음파 행위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행위한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의사의 기준은?												
12	외래 진료 시 초음파					청구는 일지	·별 청구	로 J	T020) 초음Ⅱ	· 검사 .	시행일자를	를 별도
기존 89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 시행일자 기재 방법	기재	할 필요	2 없	음.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관련 Q&A

□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연번	질의	답변
기존 31번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중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환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초음파 검사의 급여가 가능한가?	초음파 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결핵질환(잠복결핵감염 제외)에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급여함.
2 기존 85번	신생아중환자실 환아에게 실시하는 초음파 적용기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해당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환아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실시한 초음파를 의미함.
3 기존 36번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에게 실시한 유도초음파 검사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할 수 있나?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대상 6의2.에 의거 유도목적의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급여기준」외에도 비급여할 수 없음.
4 기존 44번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범위	4대 중증질환이 다음과 같이 의심되는 경우에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증상·징후 또는 타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 해당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 나.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고, 특이적인 과거력이 있어 실시하는 경우 다. 무증상환자이나 의심되는 질환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단, 검진 목적으로 무증상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대상임) 라.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만료된 환자가 증상, 징후 또는 타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질환의 재발을 의심하여 실시하는 경우
5 기존 64번		진단을 위해 불필요하게 연속적인 반복 검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 ※ 평생 또는 연간 개념 없음
6 기존 65번	여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여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의심하여 실시한 경우 의심 질환별 각각 급여함.
7 기존 66번	이전에 동일한 질환을 의심 하여 초음파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산정특례 적용대상 질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다시 동일한 질환 발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생 하여 실시한 초음파 검사의 급여 인정여부	에피소드가 새로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판단하에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함.

연번	질의	답변
8 기존 67번	에게 이전 초음파 검사 결과와 비교(size 등)하기	동일한 에피소드에 해당되므로 비급여대상임.(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실시한 경우 제외) 단, 환자의 증상, 징후, 타 검사상 이상 소견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는 동일 질환을 의심하더라도 새로운 에피소드로 급여 인정함.
9 기존 45번	목에 종괴가 만져지고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있어 외래를 방문한 환자로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여 갑상선암을 의심한 후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부 초음파 급여 인정여부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10 기존 51번	갑상선암 산정특례 만료 이후 경부림프절병증 (Cervical LAP), 불편감으로 갑상선암 재발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11 기존 52번	이전에 갑상선 초음파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환자의 진술과 최근 6개월간 4~5kg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어 갑상선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암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기존 70번	경부에 결절이 촉지되어 갑상선암 의심하에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지 않는 환자가 이상증상, 갑상선호르몬 수치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 재차 갑상선암 의심하에 경부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새로운 에피소드의 발현으로 급여대상임.
13 기존 54번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서 심전도 및 심장표지자 검사 결과 급성관동맥 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이 의심되어 심장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연번	질의	답변
14 기존 55번		질병 특이적인 증상으로 인한 심장질환 의심을 하여 진단을 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15 기존 63번	하지근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뒤센 근육병을 의심한 뒤, 동반 될 수 있는 심근증의 추가 진단을 위해 심장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산정특례 대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16 기존 62번	R/O 백혈병(leukemia)이나 그 외 희귀난치 혈액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산정특례 대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17 기존 46번	배뇨 시 불편감을 호소한 환자로 전립선암이 의심 되어 진단을 위해 남성생식기 초음파 (전립선·정낭)를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암을 의심하여 진단 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18 기존 50번	복통과 질출혈 (vaginal bleeding)로 응급실 내원 시 CA125 수치 상승 소견으로 자궁내막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암을 의심하여 진단 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19 기존 56번	뇌 자기공명영상 혈관촬영	뇌혈관질환이 의심되어 타 영상검사와 함께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경동맥 초음파는 급여대상이나, 타 영상검사로 1차적으로 경동맥 협착이 진단된 이후 시술 등을 위해 실시한 경동맥 초음파는 급여대상이 아님.
20 기존 57번	신경학적 병력 청취 또는 진찰상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초음파 급여 인정여부	신경학적으로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환자에게 진단을 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이나, 신경학적 이상증상 혹은 진찰 소견* 없이 단순히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실시한 초음파는 급여대상이 아님.

연번	질의	답변
		* 신경학적 이상 증상 혹은 진찰 소견은 병력 청취 또는 진찰상 아래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 등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함. - 뇌신경 이상 소견: 복시, 안구운동 장애, 시야 장애, 시력 저하, 안구진탕, 발음장애, 안면마비, 안면 감각 이상 등 - 사지(팔, 다리) 이상 소견: 근력 저하, 감각 저하, 감각 이상, 조절기능 장애 - 기타: 보행 실조, 균형 장애, 경동맥 잡음
21 기존 58번	고령/고혈압/당뇨병 등 뇌졸중 주요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가 어지럼을 호소하는 경우 급여 인정여부	신경학적 진찰상 이비인후과적 문제(돌발성/자세성 어지럼증, 전정신경병증등)로 인한 어지럼증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뇌혈관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경동맥 초음파는 급여대상임.
22 기존 59번		질환이 의심되는 새로운 에피소드의 발현 없이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이 아님.
23 기존 60번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질환의 시술/수술 여부 혹은 입원 진료 시 예측되는 NIHSS 점수와는 상관없이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질환 의심하에 진단을 위해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24 기존 61번	손가락이 저리고 붓는 증상이 지속적이고 통증이 심화되어 외래를 방문한 환자로 혈청검사상 이상 소견이 보여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한 뒤, 진단을 위해 관절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산정특례 대상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임.
25 기존 68번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서로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각각 급여대상임.

□ 수가산정방법

연번	분류 변호	질의	답변
26 기존 17번	L+946	관절초음파(편측) 수가 산정방법	관절초음파(편측)는 양측 병변이 있는 경우에 해당부위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다만, 편측병변의 비교·관찰을 위해 양측에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부위 소정점수의 100%로 산정함.
27 기존 18번	L+946	수 근 관 절 (Carpal Joint)이나 족근관절 (Tarsal Joint)은 어디에 속하는가?	수근관절과 족근관절만 단독으로 검사할 경우 나946가(1)*로 산정하고,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을 같이 검사할 경우 나946가(3)**으로 산정함. * 나946가(1) 손가락·발가락 ** 나946가(3) 고관절·견관절·손목관절·발목관절
28 기존 19번	나946	연부조직 초음파 일반/정밀 수가산정 방법	나946나(2) 정밀은 연부조직에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주변 림프절 뿐만 아니라 림프절 전이 여부를 진단·평가하기 위하여 검사한 경우 산정하며, 그 외에는 나946나(1) 일반으로 산정함.
29 기존 75번	나948	척추동맥 산정방법	나948나(2) 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기타동맥에 해당함.
30 기존 76번	나948	혈류매개성 혈관확장 검사와 같은 기능검사가 추가될 경우 산정방법	해당 진단초음파 소정점수에 포함됨.
31 기존 77번	나948	상지-정맥(동맥) 도플러 초음파와 동정맥루 혈류 및 협착 측정을 동시 실시 시 산정 방법	나948다(1) 상지-정맥(동맥) 초음파 소정점수만 산정함.

□ 나951 임산부 초음파

산전진찰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951 임산부 초음파(진단초음파) 급여

(정상임신부) 임신 주수별 해당 횟수 급여(7회), 횟수 초과 시 비급여 (태아 이상이나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급여 ※수가코드(EB511, EB511001, EB515, EB515001) ※ 유도초음파는 급여대상 아님.

연번	질의	답변
1 기존 20번	제1삼분기, 제2,3삼분기 기준은?	임신 제1삼분기는 착상부터 임신 13주까지(13주 6일까지), 제2,3삼분기는 임신 14주부터 출산 시까지 해당됨.
2 기존 79번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의 적용기준	초음파 검사로 임신이 확인된 경우(G-sac, York-sac)를 의미함.
3 기존 87번	자궁외 임신 시 실시하는 초음파 적용기준	자궁외 임신이라 하더라도 G-sac, York-sac이 확인될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함.
4 기존 21번		임산부 정밀 초음파로 태아정밀계측 실시 중 태아 기형이 확인되어 기형과 관련된 추가적인 계측을 실시한 경우, 또는 타 검사 등으로 기형 여부가 확진되어 기형아 정밀계측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5 기존 22번	다태아 초음파 산정 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은?	태아 수에 따른 정확한 상병(완전코드)을 기재해야 함 2태아: 쌍둥이임신(O300) - 3태아: 세쌍둥이임신(O301) - 4태아: 네쌍둥이임신(O302) - 5태아 이상: 기타 다태임신(O308) - 다만, 상세불명의 다태임신(O309) 코드를 사용할 경우 사유 기재
6 기존 88번		다태아 가산 시 기준이 되는 소정점수는 "나951나(1) '주'항"에 해당되는 수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일반 수가인 1,104.83점*의 50%를 추가로 산정한다는 의미임. * 2024.1.1. 상대가치점수 기준
		(예시)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 받아 "나951나(1) '주'항"에 해당되는 쌍태아 임부의 제1태아는 1,436.27점, 제2태아는 552.42점을 추가로 산정
7 기존 34번	「산전진찰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에서 비급여대상 검사의 유전학적 양수검사 시 유도초음파는?	유전학적 양수검사는 비급여대상 검사이므로 이에 실시하는 유도초음파도 비급여임.
8	임산부 초음파의 검사항목은?	해당 학회에서 제출한 행위분류별(일반, 정밀) 실시 검사항목(행위정의) 관련 [별첨] 자료 참고
기존 78번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행위 → 행위정의 → 수가 조회
9 기존 38번	임산부 초음파 산정 시 기재 사항	"JT005"에 초음파 검사 시 임신주수를 기재함.
10 기존 39번	임산부 초음파 산정횟수 초과 시 기재사항	임신 과정 중 의학적 판단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7회를 초과하여 일반이나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JX999"에 초과 사유를 Free Text로 기재함.

연번	질의	답변					
11 기존 84번	(비급여) 분만기간 초음파 산정방법	1. 정의: 분만을 위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 (예: 분만 전 태아상태확인, 분만 중 태반배출유무 확인, 분만 후 오로상태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분만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					
042		2. 적용방법 1) 분만과 연결되지 않은 입원: 산전진찰 목적으로 실시된 경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적용 -(정상임신부) 7회까지 급여, 그 외 비급여 -(태아의 이상이나 이상이 예측되는 경우) 급여					
		2) 분만과 연결된 입원: 분만기간이 장기로 길어진 경우 분리청구 시점 기준으로 적용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률 차이로 분리청구					
		입원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입원					
		(정상임신부) 7회까지 급여, 그 외 비급여 (태아의 이상이나 이상이 예측되는 경우) 급여 분만기간 초음파(비급여)					
		↑ 분리청구 시점 구분					
		(제왕절개 분만) 청구방법 차이(DRG/행위별)로 분리청구 시 ▶ 임신 유지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서 예상치 못하게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행위별 청구) 제왕절개분만 입원(DRG 청구) (정상임신부) 7회까지 급여, 그 외 비급여 (태아의 이상이나 이상이 예측되는 경우) 급여					
		↑ 분리청구 시점 구분					
		▶ 임신 유지목적으로 입원하여 6일 이내에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DRG 청구					
	분만기간 초음파(비급여)						
		⇒ (분리청구) 분리청구 시점 기준으로 초음파의 급여/비급여 구분 (DRG 청구) 분만기간 초음파 비급여					

<별첨: 임산부 초음파 해당 행위에 대한 검사항목>

※ 각 행위에 대한 검사항목은 해당 학회에서 제출한 행위정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임.

	일반	정밀
	① 태아수	① 태아수
	② 임신낭	
	③ 난황 (York sac)	② 난황 (York sac)
	④ 태아심장박동수 (Fetal Heart Rate)	③ 태아심장박동수 (Fetal Heart Rate)
제	⑤ 정둔장(Crown-rump Length) 또는 태아신체계측 (Fetal Biometry)	④ 정둔장(Crown-rump Length) 또는 태아신체계측 (Fetal Biometry)
1	* 태아신체계측 세부항목: 양쪽마루뼈지름(Biparietal Diameter), 대퇴골길이(Femur Length),	* 태아신체계측 세부항목: 양쪽마루뼈지름(Biparietal Diameter), 대퇴골길이
' 삼	복부둘레(Abdominal Circumference)	(Femur Length), 복부둘레(Abdominal Circumference)
		⑤ 태아 구조 Screening 평가
분		- 머리와 목(Head & Neck) / 심장과 흉부(Heart & Thorax) / 복부(Abdomen) /
기		비뇨생식계(Genito-Urinary System) / 복벽(Abdominal Wall Defect) /
		척추(Spine) / 사지(Extremities)
		⑥ 정확한 시상면에서의 태아목덜미투명대(Nuchal Translucency)
	⑥ 태반 및 제대평가(Placenta and Umbilical Cord)	⑦ 태반 및 제대평가(Placenta and Umbilical Cord)
	⑦ 양수량 적정성 평가(Amniotic Fluid)	⑧ 양수량 적정성 평가(Amniotic Fluid)
		① 태아수
		② 태아선진부
	① 태아심박동 (Fetal Heart Beat)	③ 태아심박동 (Fetal Heart Beat)
제	② 태아신체계측(Fetal Biometry),	④ 태아신체계측(Fetal Biometry)
	아두대횡경(Biparietal Diameter; BPD), 복부둘레(Abdominal Circumference; AC), 대퇴	아두대횡경(Biparietal Diameter; BPD), 머리둘레(Head Circumference;
2,	골길이(Femur Length; FL)	HC), 복부둘레(Abdominal Circumference; AC), 대퇴골길이(Femur Length;
3		FL), 상완골길이(Humerus Length; HL)
삼		⑤ 태아의 각 장기 및 신체부위별 검사(Parts of the Fetus)
분		- 머리와 목(Head & Neck) / 얼굴(Face) / 심장과 흉부(Heart & Thorax) /
기		복부(Abdomen) / 비뇨생식계(Genito-Urinary System) / 복벽(Abdominal
		Wall Defect) / 척추(Spine) / 사지(Extremities)
	③ 양수양(Measurement of Amnionic Fluid), 단일최대깊이(Single Deepest Pocket) 또는	⑥ 양수양(Measurement of Amnionic Fluid), 단일최대깊이(Single Deepest
	양수지수(Amnionic Fluid Index; AFI)	Pocket) 또는 양수지수(Amnionic Fluid Index; AFI)
	④ 태반과 탯줄(Placenta and Umbilical Cord)	⑦ 태반 및 제대(Placenta and Umbilical Cord)

□ 유도·특수초음파(4대 중증질환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적용 항목)

연번	분류 번호	질의			답변			
1 기존 25번	나956	유도초음파 산정방법	천자, 세침흡인, 생검, 경피적 경화술, 고주파열치료술 등의 행위를 양측장기에 각각 실시하거나, 편측에 여러 번 실시하더라도 주된 유도초음파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함. (예시1) 양측 유방에 초음파 유도하 생검을 실시한 경우 유도초음파(॥)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함. (예시2) 초음파 유도하 신낭종을 흡인하고 경화술을 실시할 경우 유도초음파 (॥)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함.					
2	나956	유도초음파 산정방법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목록 중 제2장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해당될 경우 산정할 수 있음.			
기존 33번			분류	코드	행위명			
				M6850	낭종흡인요법			
				C8040	흉막천자			
				C8060	심당천자			
				C8100	더글라스와천자			
				C8111 C8112	양수천자			
				01510	흉강삽관술(폐쇄식)			
			(1)	O1901 O1903 O1905	부분체외순환			
				M6670	경피경간담즙배액술			
				M6690	경피적담낭조루술			
				M6741	경피적튜브배액술			
			M6773 경피적간내홀뮴주입술					
				M6830	경피적장루술[공장루,맹장루포함]			
				기타	동정맥루 혈관지도검사, 수술 전 Tattooing, 수술 전 Wire 삽입			
				C8502	침생검(표재성)-근육및연부조직			
				C8506	침생검(표재성)-기타부위			
				C8511	침생검(심부)-복막			
				C8513	침생검(심부)-장기[편측]			
				C8641	유방생검[편측]-침생검			
				C8551	전립선생검-경피적			
			(II)	C8561	고환,부고환생검-경피적			
				C8572	자궁내막조직생검-구획소파생검			
				C8573	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C8574	자궁내막조직생검-단순소파생검			
				C8575	자궁내막조직생검-자궁경내소파술			
				C8591	갑상선생검-침생검			
				M0031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연번	분류 번호	질의		답변				
			분류	코드	행위명			
				M0032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기타			
				R4028	자궁내풍선카테터충전술[자궁용적측정포함]			
				R4103	질식배농술-질벽혈종제거			
				R4271	자궁내장치삽입술			
				R4277	자궁내장치제거료(실이 보이지 않는 경우)-기타의 경우			
				R4441	계류유산소파술-12주미만			
				R4442	계류유산소파술-12주이상			
				R4460	태아축소술			
				R4521	자궁소파수술			
				M6781	장중첩증 비관혈적정복술-성공한 경우			
				M6782	장중첩증 비관혈적정복술-실패하여 관혈적수술을 실시한 경우			
				M6800	비촉지유방종양침위치결정술			
				M1771등	경피적경화술			
				R4016	양막내양수주입술			
				R4182	자궁내반증수술-용수정복			
				R4435	난소낭종 또는 난소농양 배액술[질부접근]			
				QZ841등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IV)	M6880등	경피적 냉동제거술			
				RZ562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유도료 별도 산정]			
3 기존 83번	上714	(비급여)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산정범위	미세기포를 이용한 좌우단락검사, 기립경사도 뇌혈류검사, 경두개 혈관 운동반응성 검사, MES Monitoring 포함					
4 기존 28번	노985	(비급여) 수술 중 초음파의 범위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를 의미함. 수술 중에 문합부위 혈류 개통을 확인하는 간단한 행위부터 수술 중 지속적 모니터링하는 행위까지 포함됨. 다만, 심혈관조영실, 혈관조영실 등은 수술실이 아니므로 수술 중 초음파가 아니며, 유도초음파 혹은 특수초음파로 산정함.					

급여 확대 초음파 관련-공통 Q&A

* 상·하복부, 비뇨기계,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경부 초음파

연번	질 의					답 변		
기존 91번	장기별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의 의미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항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강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끝 상 진 이	까지 방 태를 진 단 및 기 경우 ²	·사선사와 단하여야 지도는 요	1:1로 영상을 함.(모니터 등 양급여 불가) 사를 실시한 9	을 동시에 보면 등 기타 의료기	서 실시간으로 술을 활용한 [업사의 시작부터 지도하고 환자 다른 공간에서의 로 및 실시간으로
2	급여기준」 본인 희망에 의하여	진	료의사기	가 질환*C	 비 있거나 의심	심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형	한 것이 아니고,
기존 93번	건강검진으로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대상인가?		상복부((신장·부	간·담낭·담 !신·방광),	도·비장·췌장),	l선·정낭·음경·음	앙·대장·서혜부·직	된장·항문), 비뇨기 , 안구·안와, 흉부,
3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진	단초음	 다. 제한적	 초음파, 단순		 :파 검사의 범약	위와 산정요건에
	따른 진단초음파,			과 같이				
기존 96번	제한적 초음파,				-	- 다 음 -		
	단순초음파의 구분				해부학적		산정요건	
	 		٦	P분	부위확인	영상	판독 소견서	기타
	지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 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 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당·		진단	해부 학적 부위	전부 확인	해부학적 부위별 영상 모두 구비	별도 구비	표준 영상항목 실시토록 권고
	용명, 담성생식기(신립신·성당· 음경·음당, 여성생식기, 인구·인와 흉부, 심장, 경부		초음파	제한적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확인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구비	별도 구비	진단초음파 이후 경과관찰
			기본 초음파	단순 (I/II)	일부부위 확인	필요시 구비	진료기록부등 검사 결과 기재	

연번	질 의	답 변
4 기존 97번	진단초음파*의 판독소견서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해도 수가산정 가능한가?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 췌장), 하복부(충수·소장· 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음경·음낭),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경부	제한적 초음파를 포함한 진단초음파는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5 기존 98번	장기별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명시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항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감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는 검사 실시인력, 산정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기존 급여대상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등**)가 진단초음파 중 복부(나944), 안(나941가), 흉부 (나942), 심장(나943, 나961), 경부(나941나)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감상선·부감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다소에 의거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도 포함함.
6 기존 110번	장기별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연 단위 경과관찰자 횟수적용 기준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연번	질 의	답 변						
7 기존 102번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질환(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따라 별개 에피소드 가능함. 다만, 30일 이내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함. ※ 소아심장 초음파의 경우(19세미만) 예외로 함.						
8 기존 106번	부위별(수가코드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기재 필요 여부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하복부(총수·소장·대장·서혜부· 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 방광),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음경·음성, 여성생식기, 안구·인와, 흉부, 심장, 갑상선·부갑상선,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는 부위별(수가코드별)로 진료기록부 또는 단독소견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만,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EB458)의 경우리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정 장기 질환으로 한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소아에게 산정하는 수가(상복부, 하복부, 비뇨기)로 단일 부위로 해석함. 본위별(수가코드별) 예시 상복부: EB441·EB442(복부-복부 초음파-간·담당·담도·비장·췌장-일반/정밀) 하복부: EB443·EB444·EB445·EB446·EB447(복부-복부 초음파-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 EB448·EB449·EB450(복부-비뇨기계 초음파-신장·부신·방광/신장·부신/방광) 등						
9 기존 117번	진단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실시 후 판독결과 기재방법	청구 시 초음파 검사 실시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JX999"에 Free Text로 기재함.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정밀)로 청구 시 정밀 해당사유를 상세히 기술 *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 청구 시 탐촉자 규격을 포함하여 기재함. * 감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 청구 시 생검 일자 및 결과를 포함하여 기재함. 단,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흉부, 심장, 경부 수술 및 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 "실시한 수술 및 시술 수가 코드/ 시술 및 수술 시행일자/ 실시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 기재하며, 특정 내역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기재형식 및 설명) 구분 구분코드 기재 의미 형식 기재방법 기재상의 및 설명) • (기재요령)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① 기재 수술·시술 행위 수술·시술 시행일자 포함한 판독결과 사항 판독결과 사항의 가공드 사항의자 포함한 판독결과 포함한 판독결과 포함한 판독결과 사항의자 포함한 판독결과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기재 기						

연번	질 의	답 변
		• (기재예시) -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하여 검사한 경우 : //타 의료기관에서 자궁체부 5cm이상 종물 확인되어 적극적인 치료 위해 의뢰됨. <이하 생략> - 자궁폴립절제술을 실시하고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 R4241/20200210/수술 후 소량씩 출혈 지속되어 초음파 검사 실시 <이하 생략> - 유방암을 의심하여 10MHz 표재성 장기용 선형 탐촉자를 사용하여 검사한 경우 : //10MHz 표재성 장기용 선형 탐촉자를 사용하여 검사. 유방촬영술상 유방암을 의심하여 검사 <이하 생략> - 방광전적출술 예정으로 마취통증의학과 협진 결과 ASA-PS 3으로 분류되어 검사한 경우 : //ASA-PS 3으로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 실시<이하 생략> - 갑상선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로 경과관찰을 위해 검사한 경우 : //2021.10.1. 갑상선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로 경과관찰을 위해 초음파 실시 <이하 생략> - 허리디스크 수술 예정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한 경우 : //수술 전 실시한 혈액검사상 간수치(AST, ALT 등) 높아 내과협진 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실시<이하 생략>
10 기존 147번	급여기준에 따른 비급여 동의서 확보 시 반드시 진료의사가 서명을 받아야 하는가?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보조인력 등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음.
11		건강검진(국가 건강검진 포함) 당일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 에서 확인되어야 함.

상복부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18.3.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6호(2018.4.1. 시행) 개정 2023.6.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2023.7.1. 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1 기존 90번	'18.4.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중 나944가(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또는 나940 단순초음파에 해당되며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 산정함. <급여 확대 초음파 검사 코드〉
2 기존 100번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일반/정밀 수가산정 방법	나944가(1)(나) 정밀은 간경변증 환자, 40세 이상이면서 B형 또는 C형 간염 환자가 간암감시검사를 실시할 경우와 간암환자*, 악성종양 중 간전이가 의심 되는 환자*, 간 이식 전·후 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실시할 경우 산정 하며, 이 외 복부질환 등이 의심되어 실시할 경우에는 나944가(1)(가) 일반 으로 산정함. * 기존 급여대상자('13년 10월~)
3 기존 101번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 시 도플러 가산은 언제 산정하나?	간 이식 전·후 상태 평가, 간 또는 췌장 종양의 상태 확인, 혈관기형이 있거나 출혈이 의심되어 도플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주2에 따라 소정점수의 10%를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함.
4 기존 95번	췌담도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시술 (PTBD, PTGBD, Cystic Fluid Drainage 등) 후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복부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급여여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자는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함(본인부담률 80%). * 공통 Q&A 3번 표 참조
5 기존 103번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일반)를 다시 실시	산정요건*에 따라 나944가(1)(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하며, 본인부담률은 80%로 적용함. * 공통 Q&A 3번 표 참조

연번	질 의	답 변
6 기존 104번	으로 초음파 검사 실시 후 담석으로 진단 받은	30일 이내에 내원하여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실시하더라도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나. 산정방법 1)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환자가 고열, 우측 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여 담낭염이 의심되어 나944 가(1)(가) 간·담낭·담도· 비장·췌장 초음파(일반) 실시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7 기존 105번	으로 초음파 검사 실시	30일 이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나. 산정방법 1)가)에 따라 급여함.
8 기존 111번	환자가 간암감시검사를	간암감시검사는 간암 고위험군에게 간암 조기 진단 목적으로 6개월에 1회씩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간암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따라서 간경변증 환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연령 구분 없이 나944가(1)(나)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정밀) 연 2회 급여 하며, 횟수를 초과하여 간암감시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9 기존 113번	자가면역성 간염과 같은 희귀난치성 환자의 초음파 경과관찰 시 수가산정방법	자가면역성 간염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해당되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기간 동안 해당 질환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급여함.
기존 114번	목적으로 나944가(1)(나) 간·담낭·담도·비장·췌장	간경변증의 간암감시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나944가(1)(나)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정밀) 대상이나, 이외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초음파는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나. 산정방법 1)가)를 적용하여 나944가(1)(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일반)으로 산정함.
11 기존 115번	복수를 천자 하기 위해 초음파로 천자 부위 위치	상복부 질환으로 인해 실시하는 처치·시술 시 보조역할을 하는 단순초음파도 '18.4.1.부터는 급여(본인부담률 80%)에 해당됨. 따라서 간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복수천자 실시 시 보조역할을 한 초음파 검사는 나940나 단순초음파(II) 본인부담률 80%로 산정함.

연번	질 의	답 변
12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사유 작성방법(예시): 수술 전 환자의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진료	의심할만한 진단검사 수치, 환자의 기존 병력 등
기존	기록부 사유 작성 방법	
153번	(예시)	
13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급여 인정되는 초음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수술*을 동반한 상복부 진단초음파-일반(나944가(1)(가))
기존 154번	무엇인가요?	검사에 한하여 1회 급여 인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와 동시 청구된 제9장의 처치 및 수술료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19.1.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2019.2.1. 시행) 개정 2024.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2024.3.1. 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1	'19.2.1.부터 급여 확대	그간 암환자, 신	1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되는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는? 하복부 ¹⁾ , 비뇨기 ²⁾ 초음파 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							
기존	대장·서혜부·직장·항문, 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녁								
118번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					
		건강보험 적용됨.							
		 * 1) 하복부: 충수	* 1) 하복부: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2) 비뇨기: 신장·부신·방광						
		<급여 확대	초음파 검사 코드>						
			구분	EDI코드					
		기본	단순초음파(I)	EB401					
		초음파	단순초음파(Ⅱ)	EB402					
			충수	EB443					
			소장·대장	EB444					
			서혜부	EB445					
		진단	직장·항문	EB446					
		초음파	항문	EB447					
			신장·부신·방광	EB448					
			신장·부신	EB449					
			방광	EB450					
			충수	EB443 <u>001</u>					
			소장·대장	EB444 <u>001</u>					
			서혜부	EB445 <u>001</u>					
		제한적	직장·항문	EB446 <u>001</u>					
		초음파 초음파	항문	EB447 <u>001</u>					
			신장·부신·방광	EB448 <u>001</u>					
			신장·부신	EB449 <u>001</u>					
			방광	EB450 <u>001</u>					
		※ 나956 유.	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	님.					
2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신장 또는 소장	이식 전·후 상태 평가, 신장	또는 부신 종양의 상태 확인, 혈	!관				
				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 가능히					
기존					, 64				
120번	언제 산정하나?	소성점수의 1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	·리메 1로 기새)함.					
		(예) 신장·부신	초음파(EB449)를 검사하면	서 도플러 검사를 같이 한 경우					
		→ FB449	010 100% 청구						
			<u>919</u> 100% 8 1 단코드 뒤에 010을 붙여 8단	사코드리 처구)					
		(검사단 3년	그고드 뉘에 이0글 풑어 8년	ユ エーエ 					
3	'경과관찰이 필요하 본하	경과관찰이 필요	한 복합 신낭종은 Rosniak	 : Classification IIF와 환자의 싱	EH				
기존	신낭종'의 범주		·	실시하지 못하고 경과 관찰히	_				
121번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Bosniak Classif	ication III, IV를 의미함.						
1212	검사의 급여기준」1.나.산정								
	방법의 1)나)(1)								

연번	질 의	답 변
4 기존 122번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직장종양, 염증성 장질환(크론병)으로 직장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와 고위 혹은 복잡형 치루(High or Complicated Type Fistula)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이 필요한 환자를 의미함.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나.산정 방법의 1)나)(2)	
5 기존 72번	잔뇨량 측정 시 초음파 검사 수가산정방법	-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방광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 확인 없이 잔뇨량만 측정 시 나940가 단순초음파(I) 산정 -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방광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면서 잔뇨량 측정 시 나944나(3) 방광 초음파 산정
		- Bladder scan 장비를 이용하여 방광 잔뇨량 측정 시 나656-3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산정
6		사유 작성방법: 수술 전 환자의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질환을 의심할만한 진단검사 수치, 환자의 기존 병력 등 ※ 주요 증상 기재 시 발생 시기, 양상, 강도, 신체검사 결과 등을 기술
7 신설	하복부 질환 외 수술 시 급여 인정되는 초음파는	하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하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수술*을 동반한 하복부 진단초음파(나944가(2)~(5)) 검사에
	무엇인가요?	한하여 1회 급여 인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의 처치 및 수술료
8 신설	비뇨기 초음파 검사 진료 기록부 사유 작성 방법	사유 작성방법: 수술 전 환자의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질환을 의심할만한 진단검사 수치, 환자의 기존 병력 등
	(예시)	※ 주요 증상 기재 시 발생 시기, 양상, 강도, 신체검사 결과 등을 기술
9 신설		비뇨기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비뇨기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수술*을 동반한 비뇨기 진단초음파(나944나(1)~(3)) 검사에 한하여 1회 급여 인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의 처치 및 수술료

소아 복부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19.2.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2019.3.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8세 미만 복부 질환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8세 미만 소아	에게 복부 질	일환이 의심되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로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산정 가능한	진단초음파는	: 다음과 같으며,
	진단이 필요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요건에 차이가 있음.		
	산정방법	- 다 음 -		
		구분	산정	요건
		7.2	표준영상	판독소견서
		1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EB458) 100%	필수 (22항목)	필수
		복부 초음파 인접부위 적용기준에 따라 주된 2 검사 100%, 제2의 검사 50% (최대 150%)	권고	필수
		3 해당 장기 초음파 검사 100% (EB441~EB450 중 1가지)	권고	필수
3	소아가산 적용 여부 도플러, 조영제 사용 가산 적용 여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제5절 초음파 검사료 주1에 따라 소아가산 적용(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제5절 [진단초음파] 나944마'주'에 따라 도플러 및	가능함. 상~6세 미만6 가치점수」 제 ⁻	은 B로 기재) 1편 제2부 제2장
4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는 복부 질환이 의심되고 난 후 경과관찰은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해당 장기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므로 나944마 소초음파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음파 검사의 급	급여기준」에 따라
5		표준영상 항목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나944마불가하며, 검사된 범위까지 해당 장기 초음파 김		

연번	질의		답변							
6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EB458)로 진단한 후 특정장기 질환이 확인							
	검사로 진단 후 경과관찰	되어 <u>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u> 해당 장기 초음파를 산정함.								
	시 수가산정방법	78	구 L 추적검사							
		구분	급여 종류	5단코드 기준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필수급여 EB441∼EB450								
		중증질환 ¹⁾	276M	LD441**LD430						
		상복부 질환	필수 ²⁾ 또는	EB441. EB442						
		0 11 22	선별급여(80%)	23 , 23						
		 하복부, 비뇨기 질환	필수 ³⁾ 또는	EB443~EB450						
		,	선별급여(80%)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기형 환자 중 1세 미만 소	변증(연 2회), 담낭용종(연 수): 복합 신낭종, 신혈관 선천성 요로계 기형 환자 :아는 연 2회)/하복부·비		!성 요로계 성 신우신염					

응급·중환자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19.6.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4호(2019.7.1. 시행)

□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연번	질의		답변						
1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범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기본초음파]는 「나952 응급· 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르며, 이 외 [진단초음파], [유도초음파], [특수초음파]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등 해당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름.							
2	응급실, 중환자실의 범위	센터, 전문용 외상센터, 지 중환자실 은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권역 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의 응급실 포함)을 말하며, 중환자실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을 말함.						
3		장소(응급실 보험법 시행	나952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응급상황 등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당 장소(응급실, 중환자실)에 초음파 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따라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의료장비 현황신고서에 초음파 장비의 "설치 장소"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로 신고되어야 함.						
4	나952나 복합 표적 초음파의 검사부위별	나952나 복합 표적 초음파 검사소견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함. 다만, 필수 검사부위인 흉부, 심장, 복부골반의 부위별 검사소견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다 음 -							
	확인 가능한 검사소견	검사소견은	모두 .						
	확인 가능한 검사소견		모두 . 부위	- 다 음 - 검사소견 예시					
	확인 가능한 검사소견	<u> </u>		- 다 음 -					
	확인 가능한 검사소견	7970	부위	- 다 음 - 검사소견 예시 폐 슬라이딩 여부 A 라인 여부 B 라인 여부					
	확인 가능한 검사소견	\frac{1}{2}	부위	- 다 음 -					
	확인 가능한 검사소견	L L L L L L L L L L	부위 흥부	- 다 음 - 검사소견 예시 페 슬라이딩 여부 A 라인 여부 B 라인 여부 흥강 내 액체 저류 여부 등 심낭삼출 여부 좌심실 수축력 평가(떨어짐, 정상, 과수축 등) 우심실 확장 여부 국소벽 운동 장애 여부 판막 기능 확인 대동맥류 파열이나 대동맥 박리 여부 심장 내 혈전 관찰 여부 등 복강 또는 골반강 내 액체 저류 여부 대동맥류 파열이나 대동맥 박리 여부 대동맥류 파열이나 대동맥 박리 여부					

연번	질의		답변
5	복합표적 초음파의 산정	원인 감별이	필요한 응급상황이나 상태 악화 시 (급성 흉부·복부·골반 외상,
	범위	심정지, 쇼크	나 불안정한 혈류역학, 호흡곤란, 흉통)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확인
		하여 임상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 산정함.
		세부분류	적응증
			급성 다발성 외상 환자의 기흉, 혈흉, 혈복강과 심낭 삼출 여부 또는
		급성	복부골반 및 흉부 장기 손상을 발견하기 위해 흉부, 심장, 복부
		흉부·복부·	골반을 동시에 확인
		골반 외상	(예시) 외상성 혈기흉, 혈흉, 비장파열 및 혈복강/오토바이 사고 후
			저혈압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 발생시, 심폐소생술 중 또는 직후에
		심정지	신속한 원인 파악을 위해 심장, 흉부, 복부골반을 동시에 확인하고
			필요시 혈관까지 확인
			(예시) 저혈량성 쇼크를 동반한 원인 불명의 심정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불안정한 혈류역학 또는 의식의 변화, 실신,
		쇼크나	발한, 전신약화, 어지럼증 등 쇼크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흉부.
		불안정한	심장, 복부골반을 동시에 확인하고 필요시 혈관 또는 근골격계까지
		혈류역학	확인
			(예시) 혈역학적 불안정을 동반한 급성폐혈전색전증/쇼크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심장, 흉부
		호흡곤란	및 복부골반 또는 혈관을 동시에 확인
			(예시) 심근수축력 저하가 동반된 급성폐부종/호흡곤란
			원인을 알 수 없는 흉통의 원인 감별을 위해 흉부, 심장 및 혈관
		흉통	또는 복부골반을 동시에 확인
			(예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신속한 흉강삽관술이 필요한 기흉/흉통
			이/이사이가 ㅂ아에 취임하기 많이 미원이라던에 !! 이주의 !!!!!
6			의(외상외과 분야에 한함)라 함은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한 세부
			야)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의미하므로 의료기관 내 외상외과의
	초음파 산정 가능 여부	개설 여무와는	관련 없이 소정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함.

□ 청구방법

연번	질의	답변
7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기존 초음파 검사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7.7	산정 시 기재 사항은?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 등을 기재함.
기존 1번		-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본·유도초음파 세부내역(JS013)*을 기재하고,
'-		초음파 검사 시행일자(JT020)는 입원인 경우 기재함.
		* 기본·유도초음파 세부내역 : 나-952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가「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진단 초음파]에서 [기본초음파]로 이동(고시 제2019-104호)함에 따라 기본·유도초음파 세부내역을 기재함.

연번	질의			답변									
8	'기본·유도초음파 세부내역'기재 대상에		여 목록표 및 급 중 [기본초음파										
기존 2번	추가되는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는 '기본	·유도초음파 세부	'내역'을	2019	9년 8월	월 1일	진료분	부터 기계	대함.			
		※ [기본초음파] 단순초음파(Ⅰ)∼(Ⅱ)와 [유도초음파] 유도초음파(Ⅰ)∼(Ⅳ)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3을 현행대로 기재함.											
9	단일 표적 초음파 검사		청구방법, 심사청					_					
기존	산정 시 '기본·유도초음파 세부내역'기재방법은?	표적 초음파 검 사유 순으로 기	ქ사가 실시된 ō 재항	해부학적	역 구둔	르코드,	/수가코	.드(5딘	·코드)/구	·체적			
3번			개리. 배부학적 구분코 <u></u>	三/수가	코드(5	[단코드	E)/구체	적 사	유				
		코드 해박	브학적 부위	검사 구분	코드		해부학적	부위	검사				
		A 뇌			Н	남성생·	식기(전립	선·정낭	등) 생식	ור			
		В 안		- 두경부 -	I	여성생	식기		07				
		C 비·부비동			J	근골격	골격						
		D 경부			K	연부		사지					
		E 흉부, 유방		흉부		혈관							
			강·췌장·대장 등)	복부			초신경 :	등)					
		G 비뇨기계(신	l장·부신·방광)		N	기타			심정	5			
		생식기(H~I),	초음파 검사 " 사지(J~M), 심증 에는 주된 해부 ^章	당(N)으를	로 나뉘	며, 동	일 검사			• • •			
10	입원기간 중 단일 표적	단일 표적 초음	파(1부위)는 청구	고 횟수!	만큼 "	JS013	3"을 긱	라 기	재함.				
기존	초음파(1부위) 검사를 총	(예시) 날짜를 [달리하여 단일 표적	석 초음피	나 검사	를 총	2회 실/	시한 경	우	,			
4번	2회 실시한 경우 기재방법은?			진료내	·			며치					
	기제당답는!	줄번호 항 목	코드(명칭)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번호				
		0001 09 01 8	EB521 응급·중환자-단일 표적 초음파(1일당)-1부위	1 '	1	2	31,160	1 (의사)	12345 /23456				
			특	정내역기	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니	내역구분		=	정내역					
		2	0001		013			통 원인					
		2	0001	JS	013		F//시술	후 경]	#번설 	J			

연번	질의		답변									
11	단일 표적 초음파(2부위 이상) 검사를 실시한		단일 표적 초음파(2부위 이상)는 검사부위 수만큼 "JS013"을 각각 기재함. (예시) 호흡곤란 원인 확인을 위하여 "폐(E)와 심장(N)"을 검사한 경우									
기존 5번	경우 기재방법은?						진료내의	-				
		줄번호	항	목	코드(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번호
		0001	09	01	EB522 (응급·중환자 초음 -단일표적(2부위)	- ·	31,160	1	1	31,160	1 (의사)	12345
					1	특정	텡내역기	재란				
		발생단	- 위구	분	줄번호	=	특정내역구	구분			특정내역	1
			2		0001		JS013		E//호흡곤란 원인 확인			
			2		0001		JS013			N//호	흡곤란 원	1인 확인
12	급성 병변 판정과 처치	단일 표	 적 <i>초</i>	I음ź	파(1부위)는 청	구홋	 흰수만큼	- "JS	S013	"을 기	 재함.	
	·시술 시 보조 역할을	(예시)	복부	팽만	원인 파악 및	관련	처치(녹	븍수천	자)를	실시한	난 경우	
기존 6번	위해 단일 표적 초음파					7	진료내역]				
	(1부위) 검사 시 기재방법은?	줄번호	항	목	코드(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번호
	JIMISBE.	0001	09	01	EB521 (응급·중환자 초음 단일표적(1부위)	음파ー	15,580	1	1	15,580	1 (의사)	12345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	S013	3	F/C8	3050/	복부팽만	원인 파	악 및 처치

남성생식기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19.8.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2019.9.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19.9.1.부터 급여	그간 암환자, 신	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경	등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는?	남성생식기 초음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정낭,						
기존		음경, 음낭(고환	음경, 음낭(고환, 부고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125번		진단하거나 경과	·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	l접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험 적용됨.				
		<급여 확대	초음파 검사 코드>						
			구분	EDI코드					
		기본	단순초음파(I)	EB401					
		초음파	단순초음파(Ⅱ)	EB402					
			전립선·정낭(경직장)	EB451					
		진단 초음파	전립선(경복부)	EB452					
		소금파	음경 음낭	EB453 EB454					
			<u>모으</u> 전립선·정낭(경직장)	EB451 001					
		제한적	전립선(경복부)	EB452 001					
		초음파	음경	EB453 001					
			음낭	EB454 <u>001</u>					
		※ 나956 유.	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	님.					
2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전립선, 음경, 원	음낭(고환, 부고환 포함)에	종괴가 있어 상태 확	인이 필요				
	시 도플러 가산은 언제	하거나 혈관질혼	<u>난이 있거나 출혈이 의심되</u>	어 도플러 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기존 126번	산정하나?	산정 가능하며 2	소정점수의 10% 가산(산정:	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일 기재)함.				
3	경직장 전립선·정낭	경직장 전립선·경	 정낭 초음파 검사 실시 시	 전립선 상부에 제한적으	로 보이는				
	초음파 검사 시 방광 부위	방광의 이상 유두	- P에 대하여는 방광 초음파 :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기존	수가산정 가능 여부								
127번	7766 776 47								
4	경복부 전립선 초음파	경복부 전립선 :	 초음파를 산정할 수 있는 경	역우는 다음과 같음.					
	산정범위		- 다 음						
기존		_ 항무이 성처 <i>.</i>	- 항문의 선천성 기형으로 초음파 탐촉자 삽입이 어려운 경우						
14번			- 항문의 전전성 기형으로 소름파 담촉자 삽입이 어려운 경우 - 항문이 포함되는 수술(직장암 등)로 항문의 폐색이 있는 경우						
			되는 구울(ㄱᆼㅁ ᆼ/포 ᆼ 질환으로 초음파 탐촉자를						
					01 450101				
		- 실환이나 과 어려운 경우	거력이 없음에도 항문이 너	1누 땁아 소음파 담속사	의 압입이				

여성생식기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20.1.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호(2020.2.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20.2.1.부터 급여	그간 암환자, 신	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에						
기존 125번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123번		위하여 의사가 결	직접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급여 확대	초음파 검사 코드>					
			구분	EDI코드				
		기본	단순초음파(I)	EB401				
		초음파	단순초음파(II)	EB402				
		TIC.	일반	EB455				
		진단 초음파	자궁내 생리식염수 주입	EB456				
		工品期	정밀	EB457				
		 제한적	일반	EB455 <u>001</u>				
		세년	자궁내 생리식염수 주입	EB456 <u>001</u>				
			정밀	EB457 <u>001</u>				
		※ 나956 유도	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 [.]	님.				
2	어선생시기 초음파 건사 시	11944라 여성색/	식기 초음파는 여러 접근방	 버(겨지자 겨진 겨히으!	크 경보브\			
_			검사를 반영한 수가로 접근					
기존	여부	점수를 산정함.						
15번								
3	여성생식기 초음파 수가	나944라(2) 정밀	은「여성생식기 초음파 검	사의 급여기준」나. 산정	; 방법 1)에			
	산정방법	따른 대상자와 0	여성생식기 암환자에 산정하	며, 이 외에 진단 목적으	으로 초음파			
기존		검사를 실시한 경	경우에는 나944라(1) 일반 <u>9</u>	으로 산정함.				
16번		 ₩ TI크. WIII	시어스로 즈이뒨어 거니하다	거으에느 나이제되(1)'ᄌ'이	ᆺᅯᅯᄉᄅ			
		※ 사궁내 생리 산정함.	식염수를 주입하여 검사한 경	경수에는 나944다(I) 구의	오성심구글			
4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자궁·난소 종양의	기 상태 확인을 위해 도플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 가능			
-1-	시 도플러 가산은 언제	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	1편 제2부			
기존 128번	산정하나?	제2장 제5절 초음	음파 검사료 주2에 따라 소	정점수의 10%를 가산함	.(산정코드			
1201		두 번째 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사고조합법이 조림법이제	어서세시기 자동		버이에게 지크 등 팬터	하지 이사			
5			난이 의심되어 의원 또는 La로 의해 사고조하면의 K					
기존	의뢰된 환자'의 의미		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또 및 기계 또는 조취병의 기					
129번		아버, 상급송합당 	병원 간에 또는 종합병원 긴	·베 의되는 해당하시 않	音.			

연번	질의		답변						
6 기존 131번	자궁외 임신으로 진단된 환자가 치료 후 경과관찰 시 초음파 검사 수가산정 방법		여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에 해당하는 단순초음파 (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본인부담률 80% 적용함.						
7 기존 130번	난임 관련 진료 시 초음파 검사 수가산정방법	급여	임 급여대상자 ¹⁾ 에게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만, 난임 급여대상 ¹⁾ 에 해당되지 을 경우는 비급여임.						
			검사 목적	수가	본인부담률				
			난임 원인 파악	진단초음파 (일반 또는 정밀)	급여				
			배란촉진제 투여 후 난포의 크기 및 수, 자궁내막두께 등 확인	단순초음파(॥)	선별급여80%				
			자연임신 시도 위한 배란일 확인	단순초음파(Ⅰ)	선별급여80%				
			관련근거:「난임 관련 진료의 급여여부」급여기 (1차성 난임)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한 (2차성 난임) 유산, 자궁외임신 및 분만 후 1년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에 생식기 초음파(일반) 또는 단순초음파(॥)를 산	하면서 1년 내에 임신이 이내에 임신이 되지 (는 「초음파 검사의 급	l 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20.8.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2020.9.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기존 132번	'20.9.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는?	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급여	확대 :	초음파 검사 코드>						
				구분		EDI코드				
		-	기본	단순초음파(Ⅰ)		EB401				
		초	음파	단순초음파(Ⅱ)		EB402				
		- 1	진단	안구		EB411				
		초	음파	안와		EB412				
			한적	안구		EB411 <u>001</u>				
		초	음파	안와		EB412 <u>001</u>				
		※ └	⊦956 유드	E초음파는 급여 확대	대상 아	님.				
2 기존 133번	안 초음파 계측검사 수가 개정 안내	따라 수기 ※ 관련	├ 재분휴 비급여	초음파-계측검사(E 루 및 코드 변경함. 수가 : 눈의 계측검사 복지부 고시 제2020	(※ 아 (레이저	간섭계이용, EZ797)	급여화에			
		구 분		현행		개정 사항				
		분류 번호	제5	제2장 검사료 절 초음파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나-941 가(2)		나-780가				
		행위명		안 초음파 -계측검사		눈의 계측검사[편측] -초음파 이용				
		코드		삭제(EB413)	•	신설(E7800)				
		점수	점수 766.95점 350.13점							
			양측 수가 편측 수가							
		비고				나780 눈의 계측검사 급여기준 신설 (고시 제2020-173호)				

연번	질의	답변	1	
3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안 초음파-계측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있던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는		
기존 134번	시 수가 관련 안내	안과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수가 신설 및 행위 재분류함. (※ 아래 표 참조)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4호, '20.9.1. 시행)		
		현행		개정 사항
		(질의·응답)		(수가신설)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질의응답 : 안계측 초음파(나941가(2))에 해당되므로 동 검사의 소정점수를	분류 번호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나-781
		산정함. 	행위명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편측]
			코드	E7810
			점수	65.01점
기존 6번	UBM(초음파생체현미경, Ultrasound Biomicroscopy) 검사 시 수가 산정방법	UBM(초음파생체현미경)검사는 안구 초음파(나941가(1))에 포함되므로 동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산정하며 표준영상의 범위 및 판독소견서 검사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표준영상의 범위 전안부 횡스캔, 전방각 횡스캔 2) 판독소견서 검사소견 수정체, 섬모체, 섬모체소대, 홍채의 이상 유무, 전방각의 폐쇄 유무		
5 기존 135번	매체혼탁으로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의 정의 「안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나.산정방법의 1)의 나)			
6 기존 136번	안 초음파 검사 시 도플러 가산 적용 여부	안구·안와에 도플러검사를 실시하더라도「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주2에 따른 도플러 가산은 적용 불가함.		

흉부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21.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4호(2021.4.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기존 138번	'21.4.1.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는?	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흉부 초음파 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 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급여 확대 초음파 검사 코드)					
		○ 구분 EDI코드					
		기본	=1.1 = 0=1(.)			EB401	
		초음파	단순초음파(Ⅱ)			EB402	
			유방·액와부-일	반		EB421	1
		진단	유방·액와부-정	밀		EB423	
		초음파	자동유방초음파	 ?방초음파		EB424	
			흉벽, 흉막, 늑	골 등		EB422	
			유방·액와부-일	반		EB421 <u>001</u>	
		제한적	유방·액와부-정	밀		EB423 <u>001</u>	
		초음파	자동유방초음파			EB424 <u>001</u>	
		흉벽, 흉막, 늑				EB422 <u>001</u>	
2 기존 139번		※ 나956 유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님.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있던 자동유방초음파 검사는 유방·액와부 초음파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수가 신설함. (※ 아래 표 참조)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6호, '21.4.1. 시행)					
		ā	 !행]		 개정 사항	
			. 3 형 고시)			(수가신설)	
		「자동유방초음 고시 제2016- :나942가 유	·190호(기결정) 방·액와부	>	분류 번호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나-942가(3)	
		초음파의 소경			행위명	자동유방초음파	
		산정하며, 초			코드	EB424	
		답어기군들 (다르도록 함.		점수	759.66점	

연번	질의	답변		
3 기존 140번	자동유방초음파(ABUS) 검사 시 수가 산정방법	자동유방초음파(ABUS) 검사는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에 따라 산정하며 표준영상의 범위 및 판독소견서 검사소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시인력은 방사선사가 촬영하고 의사가 판독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1) 표준영상의 범위 한쪽 유방에 2회 이상 양측의 영상획득 권고 2) 판독소견서 검사소견 유방실질 에코, 유방의 병변의 유무(병변이 있는 경우 병변의 크기 및 위치, 에코 등을 자세히 기술), 석회화 유무, 유관 확장 유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또한, 결론은 ACR BI-RADS에 따른 판정을 따름.		
4 기존 141번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기존 실시한 유방·액와부		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의학적으로 고 판단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함. 그 외 경우에 실시한 유방· 음파 검사는 비급여대상임.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예시1	환자가 주관적 유방통, 멍울감 등을 호소하나, 진료의사가 유방암 또는 유방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한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대상임.	
			유방촬영 결과 치밀 유방 등 소견이 있으나, 유방질환이 의심되는 다른 특별한 증상이나 다른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 실시한 유방· 액와부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대상임.	
		II 0#IAI3 I	의사가 의학적으로 추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양성 질환의 추적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대상임.	
5 기존 142번		유방·액와부 또는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에 종괴가 있어 상태 확인을 위해 도플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소정점수의 1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함.		
6 기존 143번	유방·액와부 초음파 일반 /정밀 수가산정방법	나942가(2) 정밀은 유방암 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실시할 경우 산정하며, 이 외 유방·액와부 질환 등이 의심되어 실시할 경우에는 나942가(1) 일반으로 산정함. 또한, 유방암 산정특례 종료 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실시할 경우 에는 나942가(1) 일반으로 산정함.		
7 기존 144번	유방양성종양 환자의 범위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나.산정방법의 1)의 나)			
8 기존 73번	늑골·흉골의 단발골절 진단 시 수가 산정방법	흥골 골절 또는 늑골의 단발골절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나940나 단순초음파(II)를 산정함. 흥골 골절과 함께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나942나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로 산정함.		

심장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21.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호(2021.9.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21.9.1.부터 급여	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기존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145번		직접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급여 확대 초음파 검사 코드>			
		구분 EDI코드			
		기본	단순초음파(Ⅰ)	EB401	
		초음파	단순초음파(Ⅱ)	EB402	
			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EB430	
			경흉부-단순	EB431	
		진단	경흉부-일반	EB432	
		전립 초음파	경흉부-전문	EB433	
		204	부하-약물부하	EB434	
			부하-운동부하	EB435	
			태아정밀	EB436	
		특수	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EB610	
			경식도	EB611	
		工品期	심장내	EB612	
			경흉부-단순	EB431 <u>001</u>	
			경흉부-일반	EB432 <u>001</u>	
		제한적	경흉부-전문	EB433 <u>001</u>	
		초음파	부하-약물부하	EB434 <u>001</u>	
			부하-운동부하	EB435 <u>001</u>	
			태아정밀	EB436 <u>001</u>	
		※ 나956 유도	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	님.	
2	수술 위험도 평가를	수술 위험도 평기	가를 위한 심장 초음파 검사	나는 '유럽심장학회/유럽마	취과학회
	위한 심장 초음파	(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진단명(Revised Cardiac Risk Index)이나			
기존	검사의 급여대상 범위	고위험 수술에 i	해당되는 경우 또는 미국마	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	3A-PS) 3
146번		이상의 환자'에거	세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대상임. 다만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신 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신 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 적용함.			
3	선천성 심질환 가산 적용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세	 부 상병 범주는 다음과 A	 알음.
	해당되는 세부 상병 범위		- 다 음		
기존		│ │ - 순환계통의 &	 선천기형(Q20~Q25)		
9번	9번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6, Q26.8, Q26.9)				
		- 대성백월전의 전전기영(Q20.0~Q20.0, Q20.0, Q20.9) - 폐순환의 질환(I28)			
		-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I27.8)		

연번	질의	답변	
4 기존 74번	경흉부 심초음파 산정방법	나943가 경흉부 심초음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검사난이도를 반영한 수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담당 의사가 환자 상태 등을 의학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단순' 또는 '일반'으로 산정가능하며, '일반'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단순'으로 산정 가능함. - 다 음 - (단순) 2D 또는 M-mode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 박출률 측정 (일반) 2D, M-mode, Color Doppler, Spectral Doppler, Tissue Doppler 이용한 검사와 좌심실용적측정, 판막, 심실 기능 검사까지 실시한 경우 (전문) 일반 검사 후 추가적으로 <u>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또는 스트레인 심근기능정밀 평가 또는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 또는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정밀 검사까지 실시한 경우</u>	
5 기존 10번	경흉부 미숙아 동맥관 심초음파 실시 시 수가산정	나943가(2) 경흉부 심초음파-일반으로 산정함.	
6 기존 11번	경흉부 관상동맥 초음파 검사 실시 시 수가산정	나943가(3) 경흉부 심초음파-전문으로 산정함.	
7 기존 26번	특수초음파의 적용범위	특수초음파는 체내삽입 Probe를 이용하여, 진단 목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진단 목적과 동시에 시술 중 모니터링 등을 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따라서 진단 또는 유도 등의 목적과 상관없이 특수초음파 소정점수로 산정함.	
8 기존 27번	심장내 초음파 카테터의 별도 산정여부	사용된 심장내영상초음파 카테터(3D 포함)는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3)(사)에 의거 별도 산정함.	

경부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22.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호(2022.2.15. 시행)

연번	질의	답변		
기존 148번	'22.2.15.부터 급여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는?	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경부 초음파 검사가 갑상선·부갑상선은 비정형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이 있어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는 19세 미만 환자의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진단 또는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됨. <급여 확대 초음파 검사 코드>		
		제한적 갑상선·부갑상선 EB414 <u>001</u>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EB415 <u>001</u> ※ 나956 유도초음파는 급여 확대대상 아님.		
기존 149번	생검의 범위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나. 산정방법의 1)가)	생검은 세침검사, 중심침생검, 관혈적생검 등을 포함함.		
3 기존 150번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의 의미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나. 산정방법의 1)가)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 Category III ¹⁾ 과 IV ²⁾ 에 상응하는 진단을 의미함. 1)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2)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r a follicular neoplasm Specify if Hürthle cell(oncocytic) type		
4 기존 151번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으로 진단된 경우 1회"의 의미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나. 산정방법의 1)가)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함.(평생 또는 연간 개념 아님) ※ 경과관찰 중 생검을 다시 실시하거나 재판독한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 (여포종양 의심 포함)이 아닌 경우 산정 불가		
5 기존 152번	나941나 경부 초음파 검사 시 도플러 가산은 언제 산정하나?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부에 종괴가 있어 상태 확인을 위해 도플러검사실시 시 산정 가능하며 소정점수의 1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함.		